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90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김재원·조 국·신장식

김준형 • 이해민 • 김선민

차규근 • 염태영 • 서왕진

박은정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특히 지방이나 해외 출타 중인 구성원 포함)로부터 이를 제출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어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되거나, 인증의 어려움으로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있음.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기존의 의사록 인증방식(법 제66조의2) 이외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

명의 선서를 통해 총회 의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제도(법 제57조의2)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 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 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법률 제 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
	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
	은 제외한다)의 의사록을 인증
	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
	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
	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
	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u>④</u> · <u>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
	항과 같음)